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우주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며 우주산업의 규모는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세계 우주시장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기업이 총 389개 기업중 65.6%(255개)에 달하는 등 산업성장 초기단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한편, 한국형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성공(‘22.6.21),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22.8.5) 등을 통해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이 지난 6월 개정됨

본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기반시설의 개방·확대 절차, 지체상금 한도규정, 우주신기술 지정절차,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절차 등을 규정해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법률 위임에 따라 준궤도발사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안 제1조의2 신설)
- 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 확보·조정 내용 추가(안 제2조의4항제4호, 제3호의1항제3의2호 신설)
- 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 기관 명시(안 제6조의3제3항제1호)
- 라. 위성정보의 보급·확용 통합체계 운영기관의 역할 중 중앙부처의 고유 업무 삭제 및 조정(안 제19조의3제2호, 제3호, 제5호)
- 마. 위성정보 보안업무 중 위성정보 보안규정간 통일성 유지를 위해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권고내용 추가(안 제19조의7 신설)
- 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활용을 위한 추진절차 규정(안 제19조의9)
- 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의 10% 한도로 규정(안 제19조의10)
- 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위한 신청, 심사, 지정 등 절차 규정(안 제19조의12)
- 자.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 규정(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00. 00. ~ 00. 00.) 결과, 0000

3) 행정규제 : 000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우주발사체)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를 말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의 확보·조정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의 확보·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의3제3항제1호 중 “법 제6조제4항제1호”를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 및 법 제6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점검”을 “점검 지원”으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 단서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따라 마련되는 보안업무 규정”을 “따른 위성정보

보안규정”으로 한다.

제19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 따라 관계”를 “위성정보나 위성 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으로, “필요한 보안업무 규정”을 “법 제17조 제4항제5호에 다른 위성정보의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위성정보 보안규정”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정보 보안규정 간의 균형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9부터 제19조의11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9(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활용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대학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우주개발 기반 시설을 개방하는 자에게 개방하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와 개방시간, 활용조건·절차 그 밖에 개방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방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10(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법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지체 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9조의11(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우주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체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4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우주신기술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기술성 평가 및 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의2(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 촉진 효과가 있을 것
3. 우주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주산업클러스터의 명칭 및 위치
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 그 밖에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3(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의 명칭 및 위치
 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사유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3.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서 행하여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그밖에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법 제5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u>제1조의2(우주발사체)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 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를 말한다.</u> 제2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u>법 제5조</u>-----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생 략)

제3조(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②·③ (생 략)

제6조의3(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생 략)

③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위성망
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의 확보·조정에 관한 사항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의
확보·조정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1.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 및
법 제6조제4항제1호-----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위성정보의 보급·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① (생략)	제19조의3(위성정보의 보급·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범부처 위성정보 활용사업의 기획·조정 및 시행</u>	<u><삭 제></u>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5.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u>점검</u>	5. ----- <u>점검 지원</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5(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제19조의5(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 매) ① ----- ----- ----- ----- ----- ----- ----- 「국가공간 정보 기본법」----- ----- <u>따른 위성정보 보안규정</u>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성 정보를 복제 또는 가공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다만, 「 <u>국가공간정보 에 관한 법률</u> 」과 제19조의7에 따라 마련되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9조의7(위성정보 보안업무)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나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이나 이동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7(위성정보 보안업무) ① 위성정보나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

----- 법 제17조 제4항제5호에 다른 위성정보의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위성정보 보안규정”이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정보 보안규정 간의 균형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9(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활용 등) ① 법 제18조의2 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대학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 설>

<신 설>

사업시행자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개방하는 자에게 개방하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와 개방시간, 활용조건·절차 그 밖에 개방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방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10(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법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9조의11(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우주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체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4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우주신기술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기술성 평가 및 심사

<신 설>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의2(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
한다.

1.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부합
할 것
2.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 촉진 효과가
있을 것
3. 우주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주산업클러스터의 명칭 및

<신 설>

위치

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 그 밖에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3(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
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
스터의 명칭 및 위치

2.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사유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3.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
스터의 지형도면

4. 지정 해제되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에서 행하여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밖에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4633